

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	구분	소 재 지	수 량					
1	대	광진구 중곡동 30-1	2,000.0	3,000,000	'98년도	청소년회관 건립 대상 부지	국유지(보건사회부)	
2	잡종지	마포구 성산동 519-1	3,540.0	1,277,940	"	"	강남구 역삼동 795-37 소일선	
3	전	동작구 상도동 182-13	1,872.0	2,265,120	"	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	종로구 내수동 195 김원석의 3인	
4	전,대	광진구 광장동 311외 6	6,668.0	3,255,780	"	"	강동구 길동 340- 12 문병로의 6인	
5	대	서대문구 연희동 76-23	2,439.0	3,702,200	"	소방서 신축대상 부지	마포구 노고산동 107 -35 유승종의 6인	
	건물	위 지 상	549.0	65,300				
6	대	광진구 중곡동 18-53	793.0	1,308,450	"	소방파출소 신축 대상부지	강동구 천호동 316-13 문금순	
7	대	강동구 길동 250	902.0	2,074,600	"	"	강동구 길동 340 -32 하상택	
	건물	위 지 상	1,051.0	197,000				
8	대	관악구 신림동 112-2	923.0	1,698,320	"	"	(주)그린유업	
	건물	위 지 상	891.0	258,000				
9	대	마포구 마포동 195-2	695.0	979,950	"	"	은평구 역촌동 11 -55 김치곤외 2인	
	건물	위 지 상	474.0	48,186				
10	건물 개축	강남구 역삼동 771-2	590.0	770,000	"	소방파출소 개축	기본부지 활용	
11	건물 개축	종로구 신교동 70-11	493.0	770,000	"	"	"	
12	선박	도강선박			"	노후선박(12톤급) 의 대체 건조	미정	
		예산(10톤급)	4척	1,168,000				
		부선(30톤급)	8척	765,000				
계	토지	9건	19,832.0	19,562,360				
	건물	6건	4,048.0	2,108,486				
	기타	1건	12척	1,933,000				

22. 市有財産無償使用許可同意案(서울特別市長  
提出)

23. 首都圈埋立地地方公社設立同意案(서울特別市長  
提出)

(15時 59分)

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市  
有財産無償使用許可同意案과 의사일정 제22항  
首都圈埋立地地方公社設立同意案, 이상 2건을  
일괄상정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의 심  
사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  
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 양해하시  
기 바랍니다.

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 
심사보고서

1997년 11월 14일  
생활환경위원회

1. 회부안건

<p>○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</p> <p>2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</p> <p>나. 회부일자 : 1997년 10월 20일</p> <p>다. 의안번호 : 제900호</p> <p>라. 상정일자 :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(97.11.7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원안가결</p> <p>3. 제안설명요지(환경관리실장 : 탁병오)</p> <p>□ 제안이유</p> <p>○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얻어 육군 제3182부대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시행하려는 것임.</p> <p>□ 주요골자</p> <p>가. 1936.4.1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의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입야 8필지 1,419,377㎡(429,360평)를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중에서 산 1-4번지 일부인 33,057㎡(10,000평)에 대해서는 육군 제3182부대 소속 백마유격장에서 훈련장의 숙영지로 사용키 위하여 무상사용신청을 하였음.(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)</p> <p>나.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고,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(지방재정법 제27조)</p> <p>다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.(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)</p> <p>라.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얻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육군 제3182부대에 무상사용토록 하기 위한 내용임.</p> <p>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임령)</p> <p>○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의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</p>	<p>위치한 입야 8필지 1,419,377㎡(429,360평) 재산중에서 산 1-4번지 일부인 33,057㎡(10,000평)로, 군의 발전과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격훈련장의 숙영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육군 제3182부대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와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○ 본 시유재산은 1936.4.1.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1988.5.12.부터 3년 기간으로 상기부대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바 있으며, 1990.11.6. 서울시에서는 유상전환을 요청한 바 있으나, 1997.7.9. 상기부대로부터 일부입야에 대하여 매각토록 협조의뢰한 바 있음.</p> <p>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입상이 양호한 녹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, 서울시공유재산관리지침(공유재산매각의예)에 의거 매각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고 무상사용허가코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임.</p> <p>○ 육군 제3182부대에서는 매입을 원하고 있으나 무상사용허가마저 안 될 경우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재산활용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재산이므로 무상사용허가토록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.</p> <p>5. 질의 및 답변 : 생략</p> <p>6. 소수의견 : 없음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 16명, 만장일치)</p> <p>8. 기타사항 : 없음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 심사보고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7년 11월 14일 생활환경위원회</p> <p>1. 회부안건</p> <p>○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</p> <p>2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0월 29일,</p>
---	--